##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5 발의연월일: 2024. 6. 7.

발 의 자:고민정·신장식·천하람

박홍근 • 한병도 • 이정문

김남희 · 서미화 · 윤건영

노종면・송옥주・김 현

허 영・황정아・박민규

조인철 • 박용갑 • 김한규

김종민 • 한창민 • 김영배

강준현 · 이해민 · 김승원

김원이 · 홍기원 · 박균택

정동영 · 용혜인 · 위성곤

유후덕 • 손명수 • 이워택

임미애 · 복기왕 · 김주영

박희승 • 모경종 • 박지워

전종덕 • 조승래 • 오세희

민형배 · 김남근 · 이해식

전진숙 · 박정현 · 서영석

양부남 • 문진석 • 정진욱

전혀희 · 소병훈 · 송재봉

이기헌 · 정혜경 · 김우영

이재관 · 김용만 · 문금주

이연희 • 박수현 • 조계원

이정헌 · 윤종오 · 위성락

황명선 · 문대림 · 강유정 이광희 · 정태호 · 박선원 박해철 · 김태년 · 한정애 정준호 · 이성윤 의원 (77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·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,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,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, 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46조, 제49조 및 제50조의2 신설).

####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2항 중 "11人"을 "2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理事는"을 "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역성 및 사회"로, "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"를 "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·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(性別)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(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야 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(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)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3.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
  - 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
  - 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
  - 다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, 공모·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 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.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.
- ①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다만,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제50조의2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0조의2(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  - ④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.
  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가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호 중 "추천"을 "임명제청"으로 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   第46條(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	第46條(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
등) ① (생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	②
이사 <u>11人</u> 으로 구성한다.	<u>21명</u>
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	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
고려하여 <u>방송통신위원회에서</u>	<u>지역성 및 사회</u>
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.	<u>다음 각 호에</u>
<u>&lt;신 설&gt;</u>	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
	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
	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
	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
	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
	<u>성별(性別)로 각각 1명 이상</u>
<u>&lt;신 설&gt;</u>	을 추천(교섭단체가 1명을 추
	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
	야 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
	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	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
	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
	천하는 사람 6명(지역방송 관
	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
	함한다). 이 경우 성별로 각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④ ~ ⑥ (생 략)

⑦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. << 단서</td>신설>

- <u>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</u> 한다.
- 3.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 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
   4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 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
 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 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 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 전 2명 전 2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<u>⑤</u> ~ <u>⑦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)

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

<신 설>

<신 설>

⑧・⑨ (생략)

第49條(理事會의 機能) ① 理事會 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· 議決한다.

1. ~ 7. (생 략)

임명제청은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 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 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.

①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 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① · ② (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)

第49條(理事會의 機能) ① 理事會 | 第49條(理事會의 機能) ① ------

\_\_\_\_\_

-----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8. ~ 15. (생 략) ② (생 략) <신 설> 7의2. 제50조의2의 사장후보추 천국민위원회 구성과 운영

- 8. ~ 15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50조의2(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 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 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한 국민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 추천국민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

- ②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 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 하여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 야 하며,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 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
- ④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 로 추천하여야 한다.

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
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
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
 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
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
 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